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409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665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40945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이진영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희

담당변호사 박재용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연지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와 D[E생] 사이에 2017. 5. 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들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채권자이다. 피고 C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이하 ‘제1대여’)하였고, D은 2004. 12. 6.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 7. D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 제1대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제1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5501)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7. “D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60,4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제1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4266)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2. “D은 원고에게 169,104,65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제2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4259)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3.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은 2017. 5. 8.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계약(이하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피고 B은 2020. 2. 25. 피고 C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계약(이하 ‘제2양도계약’, 제1양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제2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D이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사이의 제2양도계약 취소를 구하는바, 이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항변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C의 부모인 망 F, G는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2013. 4. 30. 피고 C에게 '2013. 7.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D은 위 약정의 이행으로써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약정과 제1양도계약은 일련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이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를 부담하는 2013. 8. 1.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 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다음 사실은 을 제1~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13. 4. 30. 피고 C에게 “1. 확인자(D)는 C에게 200,000,000원의 차용금반환의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였던 군포시 H, I에 있는 J건물 일부 건물에 대한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 확인자가 2013. 4. 2.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위 채무를 C에게 2013. 7. 30. 안에 변제하지 않을 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D은 2009. 2. 10. 군포시 H 외 1필지 J건물 K호를 비롯한 44개 상가의 소유자로서 위 상가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전세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2. 2. 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위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③ D의 채권자인 L은 D이 위와 같이 피고 C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으나,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D의 기존 채무를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체결한 것이어서 허위 채무부담 등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④ 원고는 D이 제1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으나, D이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1양도계약이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고의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①~④ 사실만으로는 제1양도계약이 위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과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B은 그 당사자가 아니다.

㉡ 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주식양도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D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2013. 7. 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1양도계약은 D이 피고 B으로부터 양도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체결한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D과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로 제1양도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㉕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인 2014. 6. 26.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J건물 M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마저도 말소되자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N로 등기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은 2015. 3. 27.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달 30일 주식회사 O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D과 피고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채무인수 또는 채권양도를 통하여 변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㉖ 더욱이 D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742) 신청사건에서 'J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들로부터 P에 돈을 차용해주도록 주선하였다. 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P에 대한 주식 전부를 그들에게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제출하면서 제1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위 심문서 내용에 의하면, D은 P의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제1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과 제1양도계약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과 별도로 제1양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제1양도계약이 체결된 지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항변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적어도 2019. 5. 20.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의 P에 대한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주식압류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9586)을 받고, 2019. 1. 25. 위 주식을 대상으로 특별현금화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742)을 신청하였다. D은 2019. 2. 25. 위 법원에 P에 대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제1양도계약을 첨부하였고, 원고는 2019. 3. 27. 위 답변서를 열람복사하였다.

② 원고는 2019. 2. 8. D을 채무자로 하여 재산명시(인천지방법원 2019카명169)를 신청하였다. D은 2019. 4. 17.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9. 4. 23. 이를 송달받았다. D은 2019. 5. 10.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명시선서를 하였고, 원고는 2019. 5. 20. 기록 열람복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그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①, ②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20.경 ‘D이 제1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D이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Q에 대한 채권(173억 원) 및 주식회사 R의 주식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D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D이 제출한 재산목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D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양도계약은 2017. 5. 8.에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및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자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D이 제1양도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제1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설정등기가 직권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써 이루어진 제1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자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물변제약정의 체결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으로써 제1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D이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 제1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D은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으로써 피고 C가 명의를 신탁한 피고 B와 사이에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제되고, 피고 B은 명의신탁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제2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으로써 제1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해제하는 의미로 제2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2~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C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D은 피고 C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 B은 피고 C의 딸로서 제1양도계약 체결 당시 만 22세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들은 D과 오랫동안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D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은 피고 C의 부모로부터 2013년 이전에 차용한 돈을 2017년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자금이 부족하였다.

③ D은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당하고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에게 다른 일반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④ D에 대한 배임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58)은 2017. 3. 21. 변론이 종결되어 2017. 5. 25.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다. 제1양도계약은 위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2017. 5. 8. 체결되었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제1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D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제1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전득자인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제2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각하 부분 제외)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봉지수

[별지]

목 록

1. 상 호 : 주식회사
2. 법인등록번호 :
3. 본 점 : 인천광역시 남구 호
4. 양 도 주 식 수 : 12,000 주
5. 1주의 양도금액 : 일금 일만원정 (₩10,000원)
6. 총 양 도 금 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원)

<끝>

